

## 나의 『위원』 유사

한 승 현  
중재위원 변호사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형태의 기관, 단체 또는 운동에 참여하게 되고, 그 중에는 '위원회'라는 이름이 붙는 조직체도 흔하다. 말석이나마 민주화 운동, 인권운동, 시민운동에 참여해 온 나로서는 민간 임의단체의 위원에 이름을 얻은 적이 많다. 그런 한편으로는 정부측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법정기구(위원회)의 위원경력도 조금은 있으니, 예컨대 방송윤리위원회, 방송위원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 등 말하자면 언론·문화분야의 심의기구에 참여했다.

1971년부터 2년 동안은 방송윤리위원으로 일했다. 태평로 조선일보사 뒤에 있던 옛날 정동방송국 자리에 방륵의 청사가 있던 시절이었다. 방륵사무국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방송윤리규정 위반으로 보이는 방송 프로그램이 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올라오면, 그것을 심의하여 방송담당자나 출연자 또는 방송국에 대하여 주의환기, 견책, 경고, 출연정지 등의 결정을 내렸다. 그때 방송국들은 방송윤리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비행소년의 신상 공개 금지 등 비교적 지키기 쉬운 규정조차 반복적으로 어겼다.

또한 방송윤리강령에 박혀 있는 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총선 때에는 여당에 이롭거나 야당에 불리한 방송이 거침없이 행해지곤 했지만, 방륵 안에서 감히 그것을 거론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던 중 KBS의 방송(라디오)내용 중 여당에 편파적인 사례가 희한하게도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넘어왔다. 그러나 위원들의 대부분이 그에 대한 제재에 회피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침묵으로 일관했다. 부득이 첫날은 결정을 보류하고 그 다음 주의 회의에서 재론하기로 했다. 두번째 회의가 열리는 날 아침 모 방송국의 간부로 있는 내 친구한테서 난데없이 아시아 야구선수권대회 결승전 구경을 가자는 유혹의 전화가 걸려왔다. 물론 나는 끝내 사양하고 방륵 심의에 나갔고, 난처해하는 다른 위원들의 입장을 절반은 묵살하고 절반은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득을 하여 심의위반 건수와 제재의 정도를 조금 낮추는 절충안을 내어 기어이 KBS 제재를 관철시켰다.

내가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이 된 것은 지난 1988년 여름이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송위원에 내 이름이 오르게 된 것은 야당 추천 몫이 인정된 덕분이었다. 입법·사법·행정 3부에서 각 4명씩의 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이었는데, 나는 야당인 평민당의 추천으로 방송위원이 되었다. 그때 통일민주당의 추천으로 위원이 된 분이 한완상 교수였다. 방송위원회의 권능은 명목상으로 막강했고 직무의 독립성에 관한 법조문도 있었으나, 실제로 친여적 분위기가 우세하여 정부의 입김에 영향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그런 중에도 위원들이 중지(중지)를 모아 힘들게 방송제도개혁안을 만들어 공보처에 냈더니, 정부 쪽에 불리해서인지 그냥 묵살 당하고 말았다. 그러던 중 1990년 7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되었다. 나는 그날로 한완상 교수와 상의한 끝에 '대통령 귀하'로 된 방송위원

사표를 써서 공보처장관에게 보냈다. 관례적으로 쓰는 "일신상 형편에 의하여"라는 사임이유 대신 "방송법의 날치기 처리에 항의하는 뜻으로..."라고 솔직하게 사유를 밝혔다.

1990년 7월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당시는 노태우 정권 치하여서 나 같은 사람은 은연중 기피인물처럼 되어 있을 때인데 혹시 나와 친분이 있는 문화부장관의 의향에 따라 내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나 짐작된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저작권문제에 관한 심의기능과 저작권분쟁에 대한 조정기능을 갖고 있는데, 나는 출판분과위원회에 속해 있으면서 제1조정부의 부장을 맡게 되었다. 저작권분쟁의 조정은 여러 가지 소모가 따르는 사법절차를 피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른바 '조정불성립'이 되어 허사가 되어버리는 약점도 있다. 2년의 임기를 세 번째 연임하면서부터 조정부는 그만 두었지만, 나라 안팎에 불어 닥친 저작권 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상응한 공부를 하는 데는 매우 유익한 자리임에 틀림없다.

1994년 9월, 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에 의하여 언론중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그 전에 나는 정정보도청구사건의 피신청인측대리인으로 재판에 나선 경험이 있었다. 엄청난 신문광고 전술로 유명한 어느 신흥 유가공업체가 모 일간신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었는데, 나는 그때 그 신문사의 고문변호사였으므로 자동케이스(?)로 소송대리인이 되었다. 그 유가공업체측은 변호사 없이 사장이 직접 재판에 나왔는데, 만나보니 나와 서로 면식이 있는 C라는 고교선배였다.

재판 심리가 끝날 무렵 나는 재판장에게 "신청인이 학교 선배라서 할 말을 다 못하는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더니 C사장도 이에 질세라 하고, 자기도 한 변호사가 고교 후배라 할 말을 다 못하니 참작해 달라고 맞받아 치는 것이었다. 어쨌던 그 사건은 정정보도명령이 떨어지고, 나중엔 간접강제명령까지 나오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의 정기간행물 등록법에는 지금의 반론보도에 해당되는 것까지도 모두 정정보도 형식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서 매우 불합리했다. 오보가 아닌 경우에도 '정정'을 해야 하는 것은 반론보도와 정정보도를 혼동하여 매체쪽에 지나치게 불리한 제도라고 생각되어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내기도 하였다. 그 후 1995년에 법이 개정되어 반론보도청구와 정정보도청구가 구분됨으로써 제도개선이 되었지만, 새로 신설된 직권중재결정제도는 합의중재의 단점을 보완하는 획기적인 일면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재위원들로서는 얼마쯤 부담스러운면도 있다. 반론 또는 정정보도에 응해야 마땅한 사안에도 언론사측이 무작정 불응하는 경우에 중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실익도 있으나, 그렇다고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의 수집·조사를 할만한 여건이 충분치 못한 지금의 실정 아래서는 어려움이 많은 것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여름, 일간신문사 사이의 과도한 판매경쟁으로 살인극이 벌어지고 이를 계기로 언론사간에 기사를 통한 상호 비방·공격이 격화되자 수십 건의 언론중재신청 사태가 벌어졌다. 반론수단을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언론사가 이처럼 반론보도청구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언론중재사건은 많아도 좋은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적어도 좋은 일이 아니다. 전자가 언론에 의한 침해사례의 빈발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언론중재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언론중재제도의 개선 못지 않게 언론매체측의 겸허한 자기성찰과 시정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